2016년도 자연 · 사회재난 대비

재난 · 재해예방 특정감사 현지처분 결과

강 원 도

[감사관실]

〈강릉시〉

1.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소홀(시정)

○ 주유취급소 주유구 접지대상 56개소중 4개소 점검결과 2개소는 적정하나, 2개소는 정전기제거설비가 미설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

2.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없이 공장신축 승인 부적정(주의)

○ 부지면적 10,000㎡이상의 공장건립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협의 없이 승인(2개소)

3.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소홀(시정)

○ 「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」(2015. 3. 11.개정)에서 규정한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특정관리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

※ 미지정 94개소 : 도로시설(교량) 76개소, 토목·건축공사장 4개소, 건축물(공동주택) 14개소

4. 교량 방호울타리 유지관리 부적정(주의)

○ 「도로안전시설 관리 및 설치지침」에서 규정한 안전등급 이상의 시설은 '교량 방호울타리'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(19개중 8개소)

5. 재난관리기금 사용 부적정(주의)

○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관리업무 소홀(시설물 유지관리사업 : 8건 114백만 원 집행)

〈태백시〉

1.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지도 · 확인 업무소홀(주의)

○ ○○○○○○○공사 등 7개소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하나 1개월에서 6개월 기간초과 실시

2. 소방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소홀(시정)

○ 2016년 종합정밀점검대상 92개소 중 6개소에 대하여 소방 기동검사 결과 2개소는 적정하나, 4개소는 피난안내도 미작성 등 부적정 관리

3.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소홀(시정)

○ 주유취급소 주유구 접지대상 4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1개소는 적정하나, 3개소는 정전기제거설비가 미설치되는 등 부적정 관리

4.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미이행(시정)

○ 「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」(2015. 3. 11.개정) 개정사항 미반영으로 공공업무시설 1개소, 종교시설 5개소를 지정해제 미이행

5. 도로제설용 자재[소금,염화칼슘] 검수 및 관리 부적정(주의)

○ 제설자재 구입에 따른 물품검수 시 '시방서'에서 규정한 품질검사 및 포장검사 미실시 등 제설자재 물품검수 소홀(소금 3,567톤, 염화칼슘 200톤)

〈고성군〉

1.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지도 · 확인 업무소홀(주의)

○ ○○○○ ○○콘도 등 5개소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1개월에서 6개월 초과 실시

2. 소방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소홀(시정)

○ 2016년 종합정밀점검대상 56개소 중 5개소에 대하여 소방 기동검사 결과 2개소는 적정하나, 3개소는 소화기 미비치 등 부적정하게 관리

3.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소홀(시정)

○ 주유취급소 주유구 접지대상 6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2개소는 적정하나, 4개소는 정전기제거설비가 미설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

4.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소홀(시정)

○ 「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·관리 지침」 개정(2015. 3. 11.)사항 미적용으로 농어촌도로 등 교량시설물 지정 누락 : 35개소

〈양양군〉

1.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지도 · 확인 업무소홀(주의)

○ 스타비치모텔 등 5개소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1개월에서 2개월 초과 실시

2.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소홀(시정)

○ 주유취급소 주유구 접지대상 14개소중 5개소 점검 결과 2개소는 적정하나, 3개소는 정전기제거설비가 미설치되는 등 부적정 관리

3.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없이 육상골재 채취허가 부적정(주의)

○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하면서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면적이 30,000㎡ 이상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이행 하였어야 하나 미이행(2개소)

4.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추진 부적정(주의)

○ 2012. 12. 20. (구)소방방재청으로부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사전검토에 대한 자료보완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1년10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있다가 보완사항 이행을 위하여 추가용역을 발주 완료 후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국민안전처에 보완사항을 제출 등 관련업무 소홀

5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· 관리 소홀(시정)

○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에 대한 행정절차 미 이행 등 지정·관리업무 소홀

※ 재해위험도가 높은 D등급 급경사지(17개소) 주민의견수렴 및 붕괴위험지역 고시 절차 미 이행

6.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소홀(시정)

○ 「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」(2015. 3. 11.개정)에서 규정한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특정관리시설로 지정하지 않아 정기점검 등 관리업무 소홀

※ 미지정 24개소 : 도로시설(교량) 20개소, 건축물 4(공동주택 1, 숙박시설 1, 종교시설 2)

7. ○○교 가설사업 및 도로확포장공사 하자보수 미 이행(시정)

○ "2014년 관내 교량 정밀점검 용역"에 따라 ○○교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하자보수공사 미 이행

※ ○○교 하자보수 대상: 상·하부 구조물 5개소(배수시설, 슬래브 하면, 박스 내부, 교각, 주탑) 20,346천원

(하자보증 기간 : '08. 9. 9. ~ '18. 9. 8.)